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2. 2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2월 1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2월 1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1. 2.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24.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
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함

나. 주요골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8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을 조정하
기 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안 제10조)
 -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중재 및 분쟁 조정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구청장이 협의 요청하는 사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 (안 제14조 및 제15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조례안의 한시적 효력(안 부칙 제2조)
 - 안 제10조제7호·제8호,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인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24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법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의제1항·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
- 대규모점포 등과 현존하는 전통시장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서로간 WIN-WIN 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었음
-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 중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우리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협의 및 분쟁을 조정·중재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을 줄이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표준안과 비교 검토하면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국장으로 지정하였고, 협의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0호에 협의회 업무 중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서울 시장 보고사항을 삭제하였음
- 이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 체제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생계형 자영업의 해당업종에 대한 별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는 취약점을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 안 제2조 제6호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 안 제2조 제8호 중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를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여 별표를 삭제한다.
- 안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로 하며,

- 안 제3조 제2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고,
“생계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으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제7호 중
“생계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으로 한다.
- 안 제7조 제2항 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한다.
- 안 제8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고,
- 안 제10조(협회의 업무)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며,
- 안 제10조 제3호 중
“중소유통기업에”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로 하고,
- 안 제10조 제4호 중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43 호
----------	-------------

제안년월일 : 2011. 2.

제 출 자 : 권영식 위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생계형 자영업의 해당업종에 대한 별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는 취약점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 안 제2조 제6호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 안 제2조 제8호 중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를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여 별표를 삭제한다.
- 안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로 하며,
- 안 제3조 제2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고,
“생체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체형 자영업”으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제7호 중

“생체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체형 자영업”으로 한다.

○ 안 제7조 제2항 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한다.

○ 안 제8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고,

○ 안 제10조(협약회의 업무)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며,

○ 안 제10조 제3호 중

“중소유통기업에”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로 하고,

○ 안 제10조 제4호 중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목적)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 안 제2조 제6호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 하며,
- 안 제2조 제8호 중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를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여 별표를 삭제한다.
- 안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로 하며,
- 안 제3조 제2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고,
“생계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으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제7호 중
“생체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체형 자영업”으로 한다.
- 안 제7조 제2항 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로 한다.
- 안 제8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고,
- 안 제10조(협회의 업무)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로 하며,
- 안 제10조 제3호 중
“중소유통기업에”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로 하고,
- 안 제10조 제4호 중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7호·제8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중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u>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 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 1호~5호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p> <p>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p> <p>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u>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u>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u>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영등포구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u>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u>생계형 자영업</u>을 보호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u>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u> -----</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호~5호 (조례안과 같음)</p> <p>6. “<u>소상공인</u>”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u>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7. (조례안 6호와 같음)</p> <p>8. (조례안 7호와 같음)</p> <p>9. -----</p> <p>-----</p> <p>----- <u>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p> <p>-----</p> <p><u>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u></p> <p>-----</p> <p>----- <u>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u> -----</p> <p>-----</p> <p>② ----- <u>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u> -----</p> <p>----- <u>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u>-----</p>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

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6호 (생략)

7.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호~4호 (생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

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항~⑤항 (생략)

제10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

1호~2호 (생략)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호~11호 (생략)

5호~11호 (생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

② (조례안과 같음)

1호~6호 (조례안과 같음)

7.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

③ (조례안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

2.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

3호~4호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 -----

②항~⑤항 (조례안과 같음)

제10조(협의회의 업무) ----- 대형유통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 -----

1호~2호 (조례안과 같음)

3. -----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 -----

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

5호~11호 (조례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43 호
----------	--------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 11. 24.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안 제8조)
 - 위원구성 : 11명 이내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업무(안 제10조)
 -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중재 및 분쟁 조정
 -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구청장이 협의 요청하는 사항
- 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에서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거나 변경

- 마.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안 제4조 및 제5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바. 조례안의 한시적 효력(안 부칙 제2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대규모점포 등) 및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법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영등포구 조례안도 유효한 효력을 가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1.6 ~ 1.26,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등포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포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영등포구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3. 소비자단체 대표
4.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

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0조(협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

-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8. 제14조제3항 및 제5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9.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10.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 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영등포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영등포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영향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영등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1.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7호·제8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제2조제8호 관련)

산업분류코드	업종명	내용
56192	패스트푸드점	피자, 햄버거 등 유사음식점업
56193	치킨전문점	치킨전문점
56191	제과점업	제과 제빵 판매
47212	육류소매업	식육점